

솔론(Solon)을 기다리며

변호사 김관기

2006/12/30

채권/채무는 기능적(functional)

- 대금업의 윤리
 - 약속은 지켜야 한다
 - 그것이 몸 파는 것이라도? 아니다!
 - 그런데 이자 놀이는 사람을 노예화한다
 -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이 된다
- 중세 가톨릭 / 현대의 이슬람
 - 가난한 자에게 대금업을 하는 자를 처벌한다
 - 돕는 것은 주는 것이어야지, “빌려”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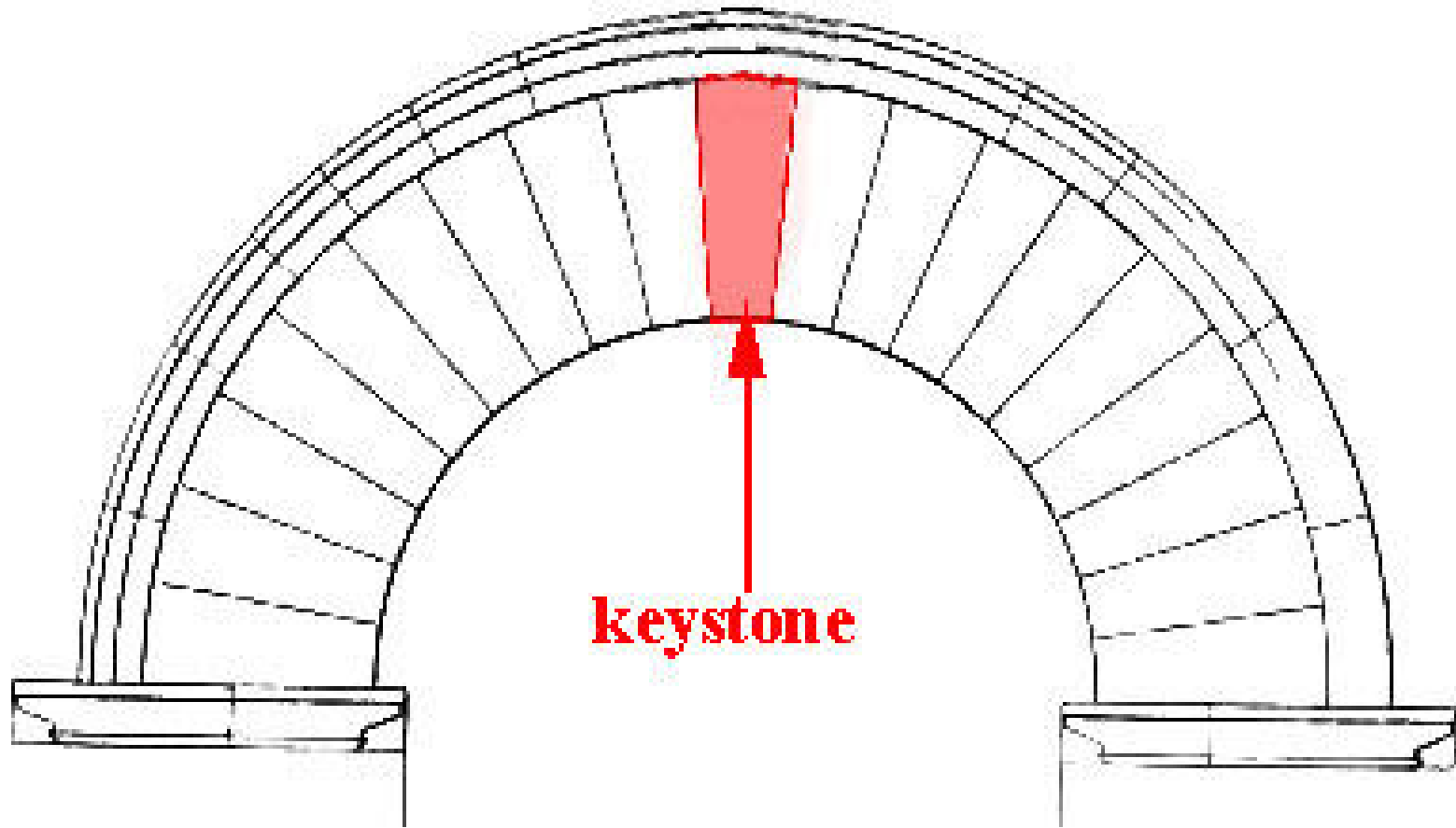
발상의 전환을 할 때

- 빗지고 가난한 자를 도둑으로 몰지 말라
- 난세에는 도적이 많다
 -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흉건적의 부두목이었다
- 수백만의 많은 사람이 빗지고 갇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성에 결함이 있다고 볼 것인가?
 - 그렇다면 우리의 도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
 - 400만이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

바보들아, 이들은 주인이야!

- 이념적으로: 인민주의(populism)
 - 머리 수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결정한다
 - 이들은 수가 많고 적극적이다
 - 국민이 주인이라면 바로 이들이 주인이다
- 기능적으로:
 -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
 - 이들은 유권자(성년이기에 빗을 젖겠지!)이기 때문
 - 산술적으로 같은 표 가치라도 결과를 바꾼다
 - 알박기 / keystone

똑같은 돌이지만 가치는...



자본주의, 시장, 경제

- 분권화된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누군가 실패한다는 것을 뜻한다.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발생한다
- 두 가지 해결방법
 -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(사회주의)
 - “파산”이 사회악이니 없애야 한다고 하는 논변
 - 파산으로 빚잔치하고 못 받는 돈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(자본주의)
 - 경제적 실패의 결과를 내부화(internalize)한다
 - 어느 쪽이던지 사회는 선택하여야 한다

IMF사태의 사회적 '해결'방안

- 금융채무를 공적자금으로 대지급
 - 외국의 채권자 횡재
 - 금융 부문의 국영화 → 외환은행 헐값매각 스캔들
 - 재정부분의 채무 급증 → 후세의 부담 잔존
- 파생되는 노동계급의 곤란함 완화를 위한 신용확대(조선시대 환곡 식으로)
 - 카드장려 / 주택자금대출 / 창업대출 →
 - 채무불이행 수백만
 - 주택금융공사/정리금융공사/신용보증기금/한마음금융 등 공기업의 확장 일로

조선시대 환곡제도에서의 비유

- 조선시대 “환곡”을 복지라고 볼 수 있는가? 아니다!
- 전형적인 공적 자금의 운용방식
- 흉년에 곡식을 풀어 일단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내는 방식
- 상환능력의 제한이라는 본질적 한계에
- 관료제의 부패로 인한 타락이 합해지면
- 기층민중의 예속화에 이웃, 친족까지 망하게 하는 인징 / 족징의 폐해
- 최근의 신용확대정책, 친구/가족의 보증을 유효하게 보는 실무를 생각하게 한다
-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그냥 주어야지, 꾸어 주는 것은 결국 착취로 귀결된다

대안은 채무의 취소일 뿐

- 성경 신명기 15장
 - 7년마다 면제하라, 채무 노예를 해방하라
- 솔론(Solon)
 -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계급대립 격화/투쟁 와중에
 - 입법자로 선출
 - 인신을 담보로 한 채무 모두 취소
 - 아테네의 경제적 번영

채무 취소의 효과

- 근로의욕증진
 - 노예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시대 통념이고 Smith의 국부론에도 나온다
- 내수진작
 - 대기업은 정당하다. 그것은 그들이 대중을 위하여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.
 - 능력이 안되는 자들이 주제넘게 할부로 자동차를 사고 휴대폰을 사지 않았다면, 오늘의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SK텔레콤이 있을까?
 - 그들을 규탄한다면 그것은 재벌의 자기부정이다.
- 금융의 과도함 완화
 - 사회적 자원이 금융/추심 쪽에 몰려 있는 상황 완화
 - 흔히 “그렇다면 금융이 위축될 것이다”라고 하는데, 지금 그래야 하는 상황
 - 계속 돈 쓰라고 전화 메시지 받는 사람이 느끼는 짜증

왜 가난한 자의 도덕만 걱정해?

- 왜 부자들의 도덕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도덕만 걱정하는가?
 - 빚을 면해 주는 것이 채무자의 도덕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면, 예금보험이나 '공적자금투입'은 부자의 도덕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 - 부자의 도덕은 타락시키면서 가난한 자의 도덕은 왜 걱정하는가?
 -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있는 자의 도덕이 먼저 서야 하는 것 아닌가?
 - “너나 잘하세요!”라는 말을 노동계급은 하고 싶다

파산제도의 유효성

- 특정 시점에서서의 채무를 그때까지의 재산으로 청산해 버리고, 나머지 채무는 면하는 제도
- 과거의 쌓인 채무자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준다
- 지금 연간 10만명 신청해도 너무 많다고 아우성인데...

진정한 보호대상: 중산층

- 중산층의 바닥에서 간신히 struggle하는 사람들이 파산제도가 보호하는 목표
- 파산제도는 중산층의 보존을 목표로 한다
-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복지가 주어져야 할 것임
- 그 전제로서 노동계급의 대량 채무는 대량으로 취소되어야 한다.

역사 속으로: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0월유신



農漁村高利債整理法 1961.6.10 법 률 제620호

- 고질적인 고리채
 - 모든이가 모든이에게 빚진 상황(게일/코리안스케치)
- 고리채정리위원회
- 적정 금액으로 평가
- 농업은행(농협의 전신)의 대출로 상환
- 신고 안하면 실권
- 파산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쌓여 온 고리채 어느 정도 정리

8.3 조치

- 經濟의安定과成長에관한緊急命令, 1972.8.2 대
통령 긴급명령 제15호
- 사채 신고
 - “세무서에 신고하라”고 했으므로 실권
- 흔히 사채에 시달리던 기업을 구제하여 현대 한
국 재벌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됨
- 한편, 근대적 금융으로 이행(단자회사)
- 일반적인 시민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
있었는 지는 실증적인 분석 필요
 - 그 이후에도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시민 사회에
깊숙이 효과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

사채업의 불법화

- 삼청교육
 - 주위의 지탄을 받는 자를 일반적으로 연행하여 ‘인권을 침해’
 - 그 중에 고리대금업자/일수업자는 없었을까?
- 장영자 사건(1982)
 -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
 - 사채업을 법률로 처벌
- 군사정권도 인식하여 강행한 금융의 남용 제한을 IMF 극복 명분으로 “국민의 정부”에서 “자유화”

혁명적인 리더십을 기다리며

- 과거의 국민은 전반적으로 폭압에 시달린 것일까?
- 모두 군사정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일까?
- 농어촌고리채 정리나 8.3조치 같은 것으로 대변되는 서민 보호 조치는 군사정권이 한 나쁜 조치일까?
- 이와 같은 재분배조치에 대하여 과거의 주인들인 당시의 국민들은 묵시적으로, 명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따른 것 아닐까?

금융은 혜택이 아니다

-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이 아니고 사회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다
 - 기존에 발생한 채무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
 -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무차별로 금융을 주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
 - 그런 면에서 “평등한 금융”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
- 중산층,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일 뿐
 - 실패의 결과는 그들이 내부화하도록 하여야 하고
 - 가난한 자에게서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

재형저축과 그밖에

- 노동계급이 중산층의 꿈을 가지도록 국고 보조
 - 지금은 그것은 커녕 이자소득을 전부 면세하는 저축이 지금 하나라고 있는가?
- 군사정부가 기층 민중을 구워삶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개혁조치라 치자
 -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부는 민중을 달랠 수 없는가?
 -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?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?